

## 2025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 공고

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「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3월 25일

경기도지사

### 1. 사업목적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속 증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정비·점검 장비개선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성(접근성, 정비시간 등)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사업개요

- (관련근거) 「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(총사업비) 1,000,000천원(도비 500,000천원, 50% / 자부담 500,000천원, 50%)
  - ※ 1개 사업장당 도비 최대 3,000천원(50%) 지원
- (사업기간 / 사업량) 2025. 3. ~ 2025. 12. / 170여 개소
  - ※ 사업량은 신청·접수 등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
- (사업내용)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·점검 장비개선 5개 품목 지원
  - 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·진단 가능한 장비 지원
  - 나. 안전한 배터리 탈부착 등 정비 작업을 위한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지원
  - 다. HV(하이브리드)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지원
  - 라. 절연 부동액 이용을 위한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지원

마. 고중량·광폭형 타이어 정비를 위한 타이어 탈착기 지원

### 3. 신청자격

○ (지원대상) 경기도 내 등록·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장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하는 사업장

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·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\*

나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\*\*

\*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(경기도), 고전압 안전교육(국가) 등

\*\*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증(국가), 그린전동자동차기사(국가), EV고전압안전 관리자(민간) 등

○ (지원 제외 대상)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가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
나.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

### 4. 세부내용

○ (보조기준) 도비 50%(최대 3,000천원), 자부담 50% 이상

○ (지원내용)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·검사를 위한 장비개선 비용

장비명	지원장비 기준
자동차 고장 진단기	· 「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·교육 및 정비 장비·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」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제작된 자동차 고장 진단기('23년 1월 이후 제조) ·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장 등 진단 가능 장비
이동형 테이블 리프트	· 바닥면적 및 테이블 크기 (너비)800mm × (길이)1,200mm 이상 · 허용압력 1ton 이상

장비명	지원장비 기준
HV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	· 출력 DC 260V, 2A 이상
진공식 부동액 교환기	· 전기차량의 냉각수 회수 및 충전 등
광폭형 타이어 탈착기	· 헬퍼 장착 · 내측클램프 24인치 이상

## 5.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

- (지원한도) 도비 3,000천원 지원
- 장비별 지원단가 상한 기준 적용(부가세 포함)
  - 가. 자동차 고장 진단기 : 4,400천원(도비 2,200천원, 50% 지원)
  - 나.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: 4,400천원(도비 2,200천원, 50% 지원)
  - 다. HV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: 2,178천원(도비 1,089천원, 50% 지원)
  - 라.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: 3,520천원(도비 1,760천원, 50% 지원)
  - 마.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: 3,410천원(도비 1,705천원, 50% 지원)
- ※ 장비 기준단가 초과할 경우,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
- 재산 처분 제한 기간 준수 : 장비 구매일로부터 5년
- 법령 준수사항
  - 가. '재산 처분 제한' 관련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3항 위반 시 같은 법 제21조제5항, 제38조제2호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
  - 나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, 「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0조 참조
- 동일 규격 장비 지원 방법
  - 보조금 지원 대상 장비 중 동일 규격일 경우 그 중 취득가액이 낮은 금액으로 보조금 지원 결정

< 예 시 >

- 자동차진단기 A제품(장비규격이 동일)을 구매할 경우 여러 구매 업체들의 취득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며, 장비별 지원 상한 단가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- 자동차진단기 B제품, C제품 등 역시 각 제품을 구매한 업체들의 취득가액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## 6. 신청 및 제출서류

- (공고기간) 2025. 3. 25.(화) 09:00 ~ 5. 2.(금) 18:00
  - (신청방법)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(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)
  - (접수처) (우편접수) (11780)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, 경기도청 북부청사 택시교통과 담당자 김종건 주무관  
(이 메 일) [movegogo@gg.go.kr](mailto:movegogo@gg.go.kr) / ☎ 031-8030-3723
- ※ 이메일 신청 참고사항 : 메일 제목 '자동차정비업 지원 신청(○○○○정비소)'으로 제출요청

- (제출서류)

- 가.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(서식1) 1부.
- 나. 지원 대상 장비 구매 계획서(서식2) 1부.
- 다.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.
- 라.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(완납)증명서 각 1부.
- 마. 사업장 세금 납부내역증명서 1부.
- 바. 환경친화적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사본 1부.
- 사. 환경친화적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 또는 교육 이수자 재직증명서 1부.
- 아. 자동차관리분야 도지사 표창 사본 1부.
- 자. 모범사업자 지정증 사본 1부.

## 7. 보조대상 선정방법 및 추진계획

- (선정방법) 제출서류 기준 배점 점수 및 지원이력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

○ (선정기준) 선정대상 중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(기본 100점 / 가점 20점)

평가항목		배점점수			
기본 5개 항목 / 가점 2개 항목		100(+20)			
<b>① 자동차정비업 정비 수량(소득) 기준(25점)</b> - 지원신청 사업장 소득(납세액) 순위에 따른 점수 부여 ※ 자동차정비업 업종별로 분류, 정부24 또는 세무서 납부내역증명서 활용		25			
상위 20% 이상	상위 20% 미만 ~ 40% 이상	상위 40% 미만 ~ 60% 이상	상위 60% 미만 ~ 80% 이상	상위 80% 미만	
25	20	15	10	5	
<b>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수요 관련(25점)</b> - 1개 사업장당 정비 예상 대수 =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대수 ÷ 자동차정비업체 수 ※ 정비업 등록 시·군 기준		25			
상위 20% 이상	상위 20% 미만 ~ 40% 이상	상위 40% 미만 ~ 60% 이상	상위 60% 미만 ~ 80% 이상	상위 80% 미만	
25	20	15	10	5	
<b>③ 자동차정비업 운영기간 기준(20점)</b> - 공고일 기준 자동차정비업 운영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		20			
20년 이상	20년 미만 ~ 15년 이상	15년 미만 ~ 10년 이상	10년 미만 ~ 5년 이상	5년 미만	
20	16	12	8	4	
<b>④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(20점)</b> -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(사업정지, 과징금, 벌금, 과태료 등) 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		20			
최근 5년 중 처분 사항 없는 경우	최근 5년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	최근 4년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	최근 3년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	최근 2년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	최근 1년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
20	16	12	8	4	1
<b>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작업인력 관련(10점)</b>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·안전 관련 교육 이수 또는 정비 관련 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(누적) * 예시) 정비 작업인력 중 교육 이수 및 자격을 둘다 갖춘 경우 10점 부여		10			
교육 이수자가 근무하는 사업장		자격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			
5		5			
<b>⑥ 가점평가</b>					
<b>⑥-a 자동차관리분야 도지사 표창 수상 여부(10점)</b>				+1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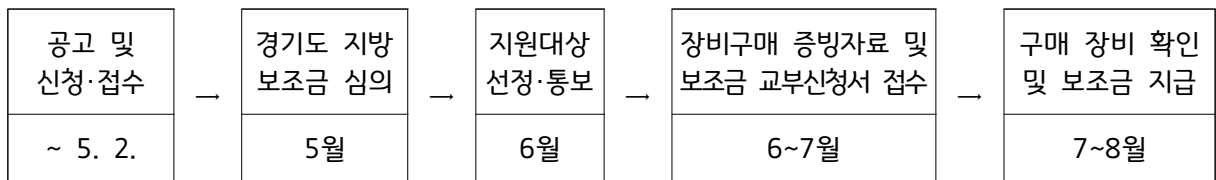
평가항목	배점점수
⑥-b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 의거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(10점)	+10

※ 본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는 점수에 관계없이 지원이력이 있는 업체보다 선순위임

※ 2024년 지원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받은 품목 외 1개 품목만 지원 가능

※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① ~ ⑤ 항목 순으로 고순위 사업장 우선 지원

- (결과발표) 2025. 6월 중 / 선정대상 사업장에 개별통보(이메일, 문자메시지 등)
- (참고사항) 선정된 사업장은 지원대상 장비구매 후 사업자 통장사본 및 장비 구매내역(구매증빙자료, 검수사진)을 제출 (제출일은 별도통보)
- (추진일정)



※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

## 8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검토 중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사실 기재,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·선정 사업장은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.
-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31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구매 장비 중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장비는 처분제한 기간(5년) 동안 중요재산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.
-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구매한 장비 중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장비의 취득 또는 변동 현황이 있을 경우 경기도청 택시교통과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택시교통과(031-8030-37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